

제299회 임시회

2011. 4. 21.(목)

심사보고서

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건설소방위원회

「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사 보고서

2011. 4. 21.(목)
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11년 4월 4일

다. 회부일자 : 2011년 4월 12일

라. 상정일자 : 2011년 4월 12일

(제29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수정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정책관리실장 고규창)

가. 제안이유

- 감사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임·직원을 겸직 할 수 없도록 한 「공공감사에 관한 법률」이 제정됨에 따라
- 현행 도의 감사관이 충북개발공사 비상임 감사이사를 겸직

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제5조(감사) 삭제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나 시 찬)

-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- 2010. 7. 1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도의 감사관이 충북개발공사 비상임 감사이사를 겸직하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써
- 동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수정가결

7. 수 정 안 요 지

-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1. 4.12(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의) 김동환 의원
- 안 제5조(감사)의 내용중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제한하는 도의 감사관 겸직금지 내용을 제외한 감사에 관한 일반적 사항은 존치하는 것이 타당함.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충북개발공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5조(감사)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

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5조(감사)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여 도의 감사부서장이 겸임하며,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.	제5조 (삭제)	<u>제5조(감사)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되 임면에 관한 사항은 공사의 정관으로 정한다.</u>

관련법령 발췌

□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

제13조(겸직 등의 금지) 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감사 기구의 장은 소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직(職)을 겸하거나,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「국가공무원법」 제64조제2항 및 「지방공무원법」 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.

□ 지방공무원법

제56조(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)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,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 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지방공기업법

제49조(설립) ②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설립·업무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.

제58조(임원의 임면 등) ① 공사의 임원은 사장을 포함한 이사(상임 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) 및 감사로 하며,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.

② 사장과 감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관한 전문적인 의견과 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사장과 감사(조례 또는 정관

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를 임명할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임원추천 위원회"라 한다)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제4항에 따라 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09.4.1>

⑥ 이사(조례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)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,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면한다. 이 경우 이사의 임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73조(감독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.

제74조(보고 및 검사 등)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사의 업무·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를 명 할 수 있다.

□ 지방공기업법 시행령

제56조의3(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) ① 법 제58조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(이하 "추천위원회"라 한다)는 공사에 두며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. 다만, 공사를 설립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그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.

1.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 2인
 2. 그 지방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
 3. 그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
- ②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인 당연직이사는 제1항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

③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.

1. 경영전문가
 2. 경제관련단체의 임원
 3.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자
 4. 공인회계사
 5.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
- ④ 공사의 임·직원(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) 및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(지방의회의원을 포함한다)은 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.